【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6-63호】

2026년 제7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 제7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채용직종	응시번호	성명	휴대전화 뒷자리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	사무보조-21	박**	3853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	사무보조-27	유**	1795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	사무보조-29	최**	3461
기간제근로자	속기	속기-2	서**	3858

2.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18.(수) 17:00까지 도착

❑ 제 출 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공무직 채용담당자)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총무팀 / ☎ 02-6320-034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모든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나오도록 발급**)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1 참고]

②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2 참고]

③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서식3 참고]

④ 이력서 1부 [서식4 참고] * 서면 및 e-mail(keternity@korea.kr) 제출

⑤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5 참고]

⑥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⑦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⑧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

⑨ 사진(반명함판) jpg 파일 * e-mail(keternity@korea.kr) 제출

3. 기타사항

❑ 제출기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확인, 제출서류 허위・부정기재 사실 확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포기서 [서식6]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서식3)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시험실시기관	③응시직명	④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⑧ 주민등록번호		
⑦ 재사용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화기질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기간제)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4)

이 력 서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E - Mail	
		주 소			

	기 간	출신학교	전공
학력			

	자격증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면허			

	기 간	기관명	담당업무
경력사항			

(서식5)

공정채용 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서식6)

채용 포기서

구 분	2026년 제7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		**e-mail**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